



특별기획 제22호

#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 및 적성국 교역법 종료의 영향과 과제

## 기획 취지

북한은 6월 26일,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핵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상응조치로 미국도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해제 의회통보 및 적성국 교역법 적용을 종료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한 6월 27일 영변 원자로의 냉각탑 폭파장면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에 코리아연구원은 북미관계의 진전에 따른 대북정책 전환의 필요성, 북한경제 및 남북경협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향후 과제를 중심으로 조명해 보았습니다.

- [1] 북핵 폐기단계 전망과 한국의 과제 : 비핵화 진전의 동력과 남북대화의 전략적 가치 (서보학: 코리아연구원 기획위원, 이화학술원 평화학연구센터 연구위원) <1쪽> 6/30
- [2] 미국의 대북 적성국 교역법 및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가 북한경제와 남북경협에 미치는 영향 (홍의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8쪽> 7/17

# 북핵 폐기단계 전망과 한국의 과제

: 비핵화 진전의 동력과 남북대화의 전략적 가치

서보혁

(코리아연구원 기획위원, 이화학술원 평화학연구센터 연구위원)

## I. 북미간 일련의 동시행동의 의미

## II. 3단계 비핵화 과정 속에서 북미, 북일관계 전망

## III. 한국의 과제: 남북대화의 전략적 의미

6월 26일 북한이 핵프로그램 신고서를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제출하고, 27일 영변의 5MW 원자로 냉각탑을 폭파하였다. 그에 상응하여 미 행정부는 북한을 “테러지원국 지정으로부터 해제하기 위한 과정을 개시하고, 적성국 교역법 적용을 종료시키기 위한 과정을 진전시켜 나간다.”는 6자회담 합의를 이행하는 조치를 단행하기 시작하였다. 부시 대통령과 북한 외무성은 각각 상대 국의 조치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표하였다. 남북대화가 잠자고 있는 사이 비핵화와 북미관계가 달려가고 있는 형국이다.

## I. 북미간 일련의 동시행동의 의미

북한의 핵프로그램 신고 직후 미 백악관은 북한의 조치를 “환영한다”고 밝히고, ‘행동 대 행동 원칙’을 상기시키면서 위 두 가지 상응조치를 단행할 것임을 밝혔다. 북한이 신고한 내용에 관해 26일 유명환 장관은 “핵 관련 시설목록과 플루토늄 추출량 등 필수적이고 중요한 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논평했다. 이에 관해 28일 방한 중이던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우라늄농축프로그램, 핵확산과 관련해서도 부분적인 보고가 있었다고 덧붙였지만, 신고서 내용은 전체적으로 플루토늄을 이용한 핵프로그램에 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3, 4월 북한과 미국이 제네바, 싱가포르, 평양 등지에서 가진 양국간 협의에 따른 것이다. 양국은 북핵 신고 목록

을 둘러싸고 내역과 형식에서 타협을 보았다. 북한은 풍루토늄을 중심으로 한 핵프로그램을 공개 방식으로 신고하지만, 핵무기 보유, 우라늄농축프로그램과 핵확산 의혹 등은 미국의 우려를 ‘알고 있다’는 표현으로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면서 양국간 비밀문서로 미국에 관련 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핵 신고서에 담긴 내용 중 가장 큰 관심사항 중 하나인 풍루토늄 추출량은 40kg으로 알려졌는데, 그것은 미국의 전문가들이 그동안 추정해 온 양의 범위(35~60kg) 내에서 낮은 수준에 해당한다. 여기에 27일 단행된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폭파 공개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비핵화 과정에서 북미간 협력을 과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의 핵신고 목록 제출과 냉각탑 폭파가 가능했던 것은 무엇보다 북한과 미국의 인내와 대화 노력에 힘은 바 크다. 양국의 6자회담 대표인 김계관 부상과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는 6자회담이 개최되지 않은 가운데서도 양국간 협의를 계속하면서 비핵화 진전 방안을 모색해 왔다. 여기에는 2006년 하반기부터 압박에서 대화로 대북정책을 선회한 부시 행정부의 ‘결단’이 크게 작용하였다고 판단된다. 일종의 ‘실용적’ 대북접근을 취하기 시작한 부시 행정부는 북한 핵의 ‘실체적 위협’ 해소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비핵화 단계를 진전시키고자 하였다. 북미간 4.8 싱가포르 협의에서 북핵 신고 방법에 유연성을 취한 것은 그런 정책 변화의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 그 저변에는 대량살상무기 관련 비확산규범이 관련국들의 일방적, 일탈적 행동을 제약하면서 타협의 길을 모색하게 한 점도 무시할 수 없다. 이는 향후에도 초국가적 행위규범이 북미 간에, 혹은 6자회담 틀에서 관련국들의 행동반경을 규제하고 국제협력을 통한 공동이익 창출의 기회구조를 형성할 수 있음을 강력히 암시해주고 있다.

결국 북한과 미국, 나머지 6자회담 참여국들의 일련의 최근 조치는 ▷ 비핵화를 최종 단계로 진입시키고, ▷ 북미, 북일 관계개선을 촉진하고, ▷ 한반도의 긴장상태 해소에 기여하고, ▷ 남북관계 개선의 모멘텀을 형성함으로써, 전체적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을 재구성하는 복합적 의미를 갖는다. 그런 점에서 북핵 폐기단계에 들어서면서 6자회담은 북핵 포기 방안에 관한 기술적 논의와 함께 비핵화 이후 한반도 안보질서 변화에 대응하는 각국간 밀도 높은 외교적 노력이 확대되는 장이 될 것이다. 이 점이 향후 6자회담이 기존 6자회담과 다른 부분이다.

## II. 3단계 비핵화 과정 속에서 북미, 북일관계 전망

북한과 미국의 금번 조치가 한반도 비핵화 노력을 진전시킨 것은 분명하지만, 일각에서는 비핵화 완료를 내다보며 본격적인 게임에 들어가기 때문에 낙관하기 어렵다는 신중한 관측도 적지 않다.

우선, 기술적 측면에서 북한의 핵 신고서 검토, 핵 폐기 및 검증 등에 관한 개념이 통일되고 관련 방법이 합의되어야 한다. 북한은 적어도 플루토늄을 이용한 핵개발은 포기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플루토늄 생산량과 추출량의 차이에 대한 평가, 추출한 플루토늄의 사용 내역 확인에 관한 기술적 검토 작업이 필요하다. 비핵화 2단계 과제를 완료하는 이런 작업은 기술적 문제이다. 나아가 핵폐기 단계에 들어서서는 기술적 논의와 정치적 논의가 혼재되면서, 6자회담이 복잡한 성격과 지루한 양상을 띨 가능성도 존재한다.

하지만 북미간 금번 상호 조치로 미국은 북핵 폐기 단계로의 진입, 북한은 국제협력과 북미관계 개선의 기회구조를 형성할 수 있게 되었다. 부시 대통령은 26일 북한의 핵신고서 제출 2시간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조치를 상세하게 소개하고 환영의 의사를 표했다. 한편, 북한은 영변 냉각탑 폭파가 있은 27일 외무성 대변인을 통해 미국의 두 가지 제재 해제 조치를 언급하면서 미국이 향후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근원적으로 송두리째 철회” 할 것을 촉구하였다. 특히, 금번 북한의 핵신고서 제출이 (몇 가지 주요사항을 누락하고 있는 한계가 있지만) “모든 핵 프로그램의 목록을 여타 참가국들과 협의한다”는 2.13 합의에 따라, 북미간에 충분한 사전 협의를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북핵 폐기단계로의 진입을 낙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때부터 비확산, 북미/북일관계, 한반도 안보질서 간의 삼각합수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 과거와는 사뭇 다른 환경에서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미 행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기로 함으로써 (물론 45일간 미 행정부의 긍정적 보고서가 미 의회에 전달된 후) 북미간 교역, 국제금융기구의 대북 지원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또 미국의 대북 적성국교역법 적용 종료 방침으로 미국 내 북한자산 동결, 국제금융거래, 북한 선박의 운항 및 보험가입 등이 가능하게 된다. 물론 이들 조치는 북한시장의 제한과 북한상품의 낮은 경쟁력, 클린턴 행정부 시기 이미 취해진 부분적 대북제재 완화 등으로 실질적 효과보다는 상징적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미국의 대북 제재는 공산국가, 인권침해국가, 북핵 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 등 폭넓은 범위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부시행정부 임기 내에 상기한 두 가지 대북 조치가 이행되고 핵폐기 협상으로 진입할 경우, 북미간 정치적 관계는 질적인 변화를 맞을 수 있다. 그럴 경우 북미관계 정상화 논의가 한반도 평화포럼 개최와 함께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런 전망은 북한 신고서에 대한 미국내 긍정적 평가와 6자회담에서의 검증, 나아가 핵폐기 방안에 대한 기본 틀이 정해지고 난 이후에 가시권에 들어설 것이다.

북한의 핵 폐기 진전이 북미관계 정상화 논의와 연결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핵신고서에 명확히 담기지 않은 3대 사안들 외에도, 미국 내의 다각적인 대북 우려 사안과 일본의 입장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부시 대통령은 26일 기자회견에서 다양한 이유에 기초한 미국의 대북제재가 여전히 유효함을 밝히면서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를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일본 언론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북한의 핵신고서 제출과 핵시설 폭파를 논평하면서,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를 강조하고 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검토 과정에서 일본인 납치문제의 해결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북한과 일본 정부는 북미간 핵신고 목록 협의가 가닥을 잡아가던 6월 11-12일 양국 관계정상화 실무그룹 회의를 갖고 “건설적이고 진지한 대화”를 가졌다. 일본측의 전언에 따르면 “북한이 이(납치) 사건은 이미 종결된 ‘기결 사안’이라고 말하지는 않았다”고 말해, 양국관계에도 긍정적인 기류가 조성되고 있음을 암시했다. 이렇게 본다면 일본인 납치문제는 북일 양국이 양자간 실무그룹 회의를 계속 열어나가면서, ‘실질적’ 문제해결의 시각에서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북한과 일본이, 북미 양자회담이 실용적 접근을 통해 유용한 결과를 도출한 경험을 학습할 것이라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

북일관계 정상화 논의는 북핵 폐기 및 북미관계 정상화 회담의 진전을 지켜보면서, 반발 뒤에서 쓰아가는 자세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도쿄 G8 정상회의 참석차 방일한 라이스 장관은 고무라 마사히코 일본 외상과 만나 양국이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 “긴밀히 협력” 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톰 케이시 미 국무부 대변인은 납북자 문제의 해결 책임은 궁극적으로 일본에 있다며 “우리(미국)는 일본의 납북자 문제 해결 노력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북미관계와 북일관계가 비핵화 진전에 영향을 받으며 전개되어 가겠지만, 두 양자관계가 속도를 달리할 수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말, 북한과 일본은 양국관계 개선을 협의를 해나갔지만 북핵문제, 미국의 견제에 의해 중단되었던 경험을 가진 바 있다.

비핵화 2단계 조치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섬에 따라 9개월간 휴회 상태에 있던 6자회담 재개가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6자회담이 7월에 개최되면 북한의 핵신고서에 대한 검증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6자 외무장관회담 일정, 3단계 핵폐기 일정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라이스 국무장관의 방한으로 이뤄진 한미 외무장관 회담 이후 두 장관은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의 핵신고서 검증 및 핵폐기 단계에서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과 미국은 양국이 취한 일련의 조치를 평가하며 “행동 대 행동의 원칙”을 함께 거론하며, 그런 조치에 대한 양국간 협의를 과시하였다. 북미간 상호 조율된 일련의 조치로 비핵화 2단계는 45일이 경과

한 후 종료되고, 최종 단계로 들어서게 된다. 그 사이에 6자회담과 6자 외무장관회담이 개최되어 핵폐기 진행 방향과 동북아 안보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할 것이다.

### III. 한국의 과제: 남북대화의 전략적 의미

이런 전망 속에서 한국의 통일외교안보정책 방향은 어떻게 추진되어야 할 것인가? 현재까지 정부의 관련 정책 방향은 ‘비핵개방3000’과 한미동맹 강화(복원?)로 제시되어 있다. 대북정책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남북간 상호 불신으로 실종되어 있다.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그 이후 한반도 질서를 대비함에 있어서 대북정책을 어떤 비중과 정책 방향을 갖고 전개할 것인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북핵 폐기 역시 기본적으로 6자회담 틀에서 추진될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한국은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에 기여하면서 참여국들의 신뢰와 지지를 높여, 역내 외교적 위상을 높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정부의 성적표는 대단히 높은 편이다. 9.19 공동성명 도출까지 한국정부가 취한 6자회담의 모멘텀 유지를 위한 촉진자, 아이디어 제공자의 역할이 있었고, 북한의 핵 불능화 방안에 관해서도 냉각탑 폭파 아이디어 제시 등 일정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정부는 핵폐기 단계에서도 핵폐기 개념, 방안, 상응조치 관련 역할 및 비용분담 등에 있어 6자회담 참여국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비핵화에 관한 한국의 기여가 이후 한반도 질서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으로 발전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한국은 비핵화 이후 예상되는 한반도 질서 변화에 대한 준비가 없을 경우 (혹은 준비가 있어도 그에 대한 적절한 반응을 얻지 못할 경우) 역내 질서변화 과정에서 뒤쳐질 우려가 있다. 그런 우려를 반영한 죄악의 시나리오는 북미, 북일 관계정상화와 남북 대결상태의 지속이다. 그것은 곧 한반도의 안정을 명분으로 한 주변 강대국의 남북분단 영구화이고, 그 시기의 한국정부는 역사에 오명을 남길 수 있다.

현 남북대화 중단은 북한에게만 불리한 것이 아니라 한국에게도 이롭지 못하다. 남북대화 중단은 한국이 비핵화 달성과 한반도 질서 변화에 능동적으로 관여할 주요 지렛대 혹은 전략적 진지를 놓치는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남북대화 중단은 중단 그 자체가 아니라 퇴보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제네바합의 이후 한반도 상황을 남-북-미 삼각관계의 틀에서 볼 때 시사하는 바는, 북미관계가 개선되어 갈 때 남북관계가 어떻든(예를 들면 김영삼정부 시기의 대화 중단, 김대중정부 시기 남북대화) 북미관계는 이에 상관없이 자가발전적인 양상을 띤다는 사실이다. 만약,

이명박 정부가 북한의 긍정적 반응 유도를 통한 남북대화 재개가 보수층으로부터의 지지도 하락과 대북 협상력 약화를 초래한다고 생각해 소극적이라면, 부시 대통령이 대북정책 변화를 취하면서 얻을 국가적, 개인적 차원의 이득을 생각해보길 권하고 싶다.

정부는 남북대화 재개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 계기를 포착하여 대화를 먼저 제의하여야 한다. 정부는 공개/비공개 방식을 적절히 활용하여 북측에 대화와 지원 의지, 특히 북한이 강조하는 6.15, 10.4 공동선언에 대한 ‘원칙적’ 존중 의사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 두 남북정상 공동선언에 대한 원칙적 존중과 그 구체적 이행을 별개의 문제라고 본다면, 원칙적 존중 표명으로 남북대화를 재개하고, 구체적인 이행 방법은 ▷ 적절한 수준의 남북대화에서, ▷ 남한의 새로운 정책환경을 반영하여, ▷ 북측과 협의해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8월까지 남북이 접촉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적은 것이 아니다. 정부는 6자회담, 베이징올림픽 개막식, 남북민간교류 채널, 당국간 비공개 채널 개설 등을 통하여 이같은 의사를 전달하여 당국간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대통령의 광복절 기념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아 무조건적인 남북대화를 공식 촉구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다. 이런 노력이 성과를 거둔다면 하반기 들어 남북장관급회담, 적십자회담을 열어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를 추진할 기반을 마련함은 물론, 북핵 폐기와 한반도 질서변화에 능동적으로 대비하는 포석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대북정책에 관심이 없고, 정부의 (통일)외교안보정책 결정자들이 북한을 모르고, 대미 채널이 그들의 지적, 인적 기반과 달리 별로 없다는 지적이 있는데, 그것이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만약 사실이라면 그런 인식을 바꾸고 부족한 정책 인프라를 보충하는 조치가 있기를 기대한다.

6자회담이 북한의 핵포기에 기여한 바를 부시 대통령은 매우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 26일 대북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방침을 밝히는 기자회견에서 6자회담을 일컬어 “다자 외교는 북한의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데 최상의 방법이다. … 그러나 외교적 과정이 목적 그 자체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부시행정부는 6자회담을 통해 ▷ 북한의 북미 양자협상 요구를 회피하였고, ▷ 북한의 핵포기를 위한 외교적 압박을 조직하였고, ▷ 항후 핵폐기 이행 과정에서 지불할 비용을 분담할 수 있게 되었고, ▷ 북미관계 정상화 과정을 다자틀을 이용해 조정하면서도 추진할 근거를 갖게 되었다. 결국 6자회담은 북핵 포기 실현을 위한 관련국 간 협력 장치이자 참여국들의 이익이 경합, 조정되는 공간이다.

한국은 북핵문제와 항후 대북정책을 전개함에 있어서 다자적 양자주의 방식을 취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한국이 북한문제를 비핵화로 등치시켜 거기에 모든 것을 걸거나, 그것을 6자회담에

서 모두 다뤄야한다고 생각한다면 6자회담 안팎에서 벌어지는 복잡한 정치적 역학을 무시하거나, 한국의 창조적 외교능력 부족을 시인하는 꼴이 된다. 북핵문제 해결이 진전되고 북미, 북일 관계가 개선되는 반면, 남북대화가 중단된 상태에서 한국이 처할 입장은 제네바합의 이후 김영삼 정부 시기가 잘 나타났다. 그런 점에서 북핵문제를 포함한 대북정책은 남북관계와 한미관계 등 양자관계의 조화, 이를 양자관계와 6자회담 등 다자회의 적절한 병행이 필요하다. 하나의 방식에 절대 의존하거나, 그 반대로 하나의 방식을 외면하는 것은 옳지 않다. 물론 그런 접근은 일정한 원칙 하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제는 한국정부가 남북대화를 재개하고 동북아 주변국들에 대해 전방위 외교를 펼 뿐만 아니라, 특히 북한문제를 북핵을 넘어 한반도 미래 질서를 전망하는 틀 속에서 바라보는 전략적 사고를 가지고 그것을 절실하게 추진해야 할 때이다. 지금 여름잠을 자고 있는 남북대화의 전략적 가치를 깨워 일으킬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2008/06/30)



KNSI 특별기획 제22-2호

# 미국의 대북 적성국 교역법 및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가 북한경제와 남북경협에 미치는 영향

홍익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 I.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의 현황 및 전개과정
- II. 적성국 교역법과 테러지원국 지정에 따른 제재 및 해제과정
- III. 적성국 교역법과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 IV. 적성국 교역법과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가 남북경협에 미치는 영향

북핵문제 해결과 북미관계 개선이 급진전되고 있다. 북한과 미국은 지난 4월 8일 싱가포르 회담을 통해 핵 프로그램 신고 및 상응조치와 관련한 기본적 원칙에 합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은 6월 26일 핵 프로그램 신고서를 중국에 제출하고 27일에는 영변의 원자로 냉각탑을 폭파하였다. 미국 역시 상응조치로 6월 26일에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를 의회에 통보(8월 11일 해제 예정)하였으며, 6월 27일에는 적성국 교역법에서 북한을 제외시켰다.

이러한 북미관계의 진전과는 달리 남북관계는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당국간 대화가 단절된 채 6.15 선언 이전 상태로 되돌아가는 양상이다. 특히, 이명박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정책 방향 수정을 모색하는 가운데, 7월 11일에 발생한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은 남북관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I.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의 현황 및 전개과정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의 전개과정은 크게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1단계는 1950년 이후부터 1980년대 후반까지의 대북 제재 강화기, 2단계는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까지의 대북 제재 완화기, 3단계는 2002년 2차 북핵위기부터 2006년까지의 대북 제재 재강화기이다.<sup>1)</sup>

우선 제1단계 대북 제재 강화기를 살펴보면, 미국은 한국전쟁 이후 북한에 대해 광범위하고 다양한 형태의 경제제재 조치를 취해왔다. 미국은 한국전이 일어난 지 사흘만인 1950년 6월 28

일 수출통제법(Export Control Act)을 발동해 북한에 대한 수출을 전면 금지시켰다. 또한 같은 해 12월 적성국 교역법(Trading with the Enemy Act)에 의거해 해외자산통제규정(Foreign Assets Control Regulations)을 제정하여 국내 북한자산을 동결시키고 북한과의 무역과 금융거래도 금지시켰다.

1950년대 이후에도 미국은 북한이 사회주의 국가이고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다양한 법적 근거를 통해 경제제재를 강화하여 왔다. 1951년 무역협정연장법(Trade Agreements Extension Act)은 유고슬라비아를 제외한 모든 공산주의 국가에 대해 최혜국 대우(MFN, Most-Favored-Nation)<sup>2)</sup> 부여 금지를 규정함으로써, 북한에 대해서도 동년 9월 최혜국 대우 부여가 금지되었다. 1974년 무역법에서는 최혜국(혹은 정상교역관계) 대우가 금지된 모든 나라에 대해 일반특혜관세(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sup>3)</sup> 공여가 금지됨으로써, 북한은 1975년 1월부터 일반특혜관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러한 조항으로 인해 북한은 미국시장에 수출할 경우 쿠바와 함께 Column 2의 높은 관세를 적용받는데, 이는 WTO가입 국가 또는 정상교역관계(NTR) 지위를 부여받은 국가에게 적용되는 Column 1 관세보다 최소 2배에서 수십 배 이상까지 높은 수준이다.

<표 1> 미국의 대북 제재의 근거와 관련법

근 거	관련법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한 제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성국교역법(해외자산통제규정)</li> <li>○ 방위산업법</li> <li>○ 수출관리법(수출관리규정)</li> </ul>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제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브레튼우즈협정법</li> <li>○ 수출입은행법</li> <li>○ 무역협정연장법(무역법)</li> <li>○ 대외원조법</li> </ul>
국제테러를 지원하는 국가에 대한 제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관리법(수출관리규정)</li> <li>○ 대외지원법</li> <li>○ 수출입은행법</li> <li>○ 무기수출통제법(국제무기거래규정)</li> <li>○ 국제금융기관법</li> <li>○ 대외활동수권법</li> </ul>
대량살상무기 수출 및 핵산에 관한 제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기수출통제법(국제무기거래규정)</li> <li>○ 핵확산금지법</li> <li>○ 북한 위협감소법</li> </ul>

주: 그 외 북한의 인권문제도 있으며, 이와 관련된 제재법으로는 해외지원법, 국제종교자유법, 인신매매피해자보호법 등이 있음.

자료: 김상기, 『대북경제제재의 유효성 분석: 실태와 효과』, KDI 정책연구시리즈2007-09, p.26.

또한 1961년의 대외원조법(Foreign Assistance Act)은 북한에 대한 원조 금지를 명문화하고 있는데, 동법은 공산주의 국가, 테러지원 국가, 인권침해 국가 등에 대한 지원과 원조를 금지하고 있다. 1986년에 개정된 수출입은행법(Export-Import Bank Act)에서는 공산주의 국가와의 거래에 대해 수출입은행의 보증과 보험, 신용 제공 등을 금지함으로써 북한도 거래제한 국가로 명시되었다. 한편, 북한은 1987년 11월 KAL기 폭파사건을 계기로 한층 엄격한 경제제재를 미국으로부터 받게 되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을 1988년 1월 20일부로 테러지원국가 명단에 등재하고 무기수출 금지, 이중용도품목 수출통제, 대외원조금지, 무역제재 등 추가적인 경제제재 조치를 적용하였다.

미국은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까지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완화하였는데,<sup>4)</sup> 이는 북한과 미국이 1994년 10월 제네바에서 기본합의서(Agreed Framework)를 체결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미국은 1995년 1월 행정명령으로 통신, 무역, 금융 등의 분야에서 제재를 일부 완화하였다. 주요 내용을 보면 미국과 북한간의 전화·통신의 연결과 이와 관련된 거래 허용, 개인적인 여행과 이와 관련한 신용카드사용 허용, 언론사의 지국개설 허가, 북한이 미국에서 발생 또는 종결되지 않은 거래를 결제하기 위한 미국 금융기관의 사용허가, 북한정부의 자산이 아닌 동결자산의 해제, 미국기업이 내연재로 사용하고 있는 마그네사이트의 수입, 북미 연락사무소의 개설 및 활동, 경수로건설과 관련된 거래의 허용 등이다.

1997년 4월에는 해외자산통제 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부분적 완화조치를 취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도적 지원을 위해 국제연합 및 국제적십자에 기금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거래의 허용, 미국인이 제3국에서 북한에 대해 기본적인 필수품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거래의 허용 등이다.

이상의 조치들이 매우 제한적이고 부분적인 제재완화 조치였다면, 2000년 6월에 단행한 완화조치는 상대적으로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것이었다. 주요 내용은 대부분의 북한산 상품 및 원자재 수입허용, 대부분의 미국 소비재상품의 대북한 판매 및 금융 서비스 허용, 농업·광업·석유·목재·교통·도로·여행 및 관광분야에 대한 투자 허용, 인척 및 북한인에 대한 미국인의 직접송금 허용, 북미간의 선박 및 항공기에 의한 통상적인 화물수송의 허용, 북미간 상업적인 항공기 운항의 허용 등이다. 이러한 제재완화 조치로 적성국 교역법 및 수출관리법에 근거한 일반적인 대북제재는 상당부분 완화되었지만 테러지원국 지정에 따른 대북경제제재와 미사일기술 통제 관련 경제제재 등은 여전히 유지되었다.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는 2000년 이후 부시 정부가 출범하고 양국관계가 악화되면서 다시 강

화되기 시작하였다. 미국은 2002년 10월 2차 북핵위기가 시작되고, 2006년에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단행하자 경제제재를 재강화하였다. 미국은 새로운 형태의 제재조치를 통해 북한을 압박하였는데, 우선 미국 정부는 북한 해외자금의 동결조치를 취하였다. 2005년 9월 미 재무부는 애국법(Patriot Act) 311조를 적용해 방코 빌타아시아(BDA)를 북한의 불법거래 지원협의대상자로 지정하였다. 또한 미국은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개발 및 확산과 관련되었다고 판단되는 북한기업에 대한 제재조치에도 착수하였는데, 2005년 10월 미국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8개의 북한기업을 대량살상무기 및 이동수단의 확산대상자로 지정하여 동 기업들의 모든 거래를 금지시키고 자산을 동결하였다. 이밖에도 2006년 4월에는 해외자산통제규정에 의거 미국기업이나 미국거주 외국기업들이 북한선적으로 등록한 선박을 소유, 임차,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동시에 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2006년 11월에는 UN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결의 1718호에 따라 설치된 제재위원회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활동과 관련됐다고 지정된 12개 업체와 1명의 개인명단을 제출하기도 했다.

## II. 적성국 교역법과 테러지원국 지정에 따른 제재 및 해제과정

대북 경제제재에서 적성국 교역법과 테러지원국 지정은 가장 핵심적인 조치라 할 수 있다. 적성국 교역법은 1950년 전쟁이 발발하자 북한에 대해 적용되어 현재까지 지속되었다. 북한에 대한 적성국 교역법 적용과 관련된 경제제재는 금융거래를 포함한 교역을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이다.

적성국 교역법의 해제는 대통령의 포고, 상하원의 공동결의안, 행정명령 등에 의해서 가능하다. 미국은 이번에 대통령 포고에 의해 지난 6월 27일 북한을 적성국 교역법에서 제외하였다. 적성국 교역법의 취지가 미국과 교전중인 국가와 단체를 제재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미국이 북한을 이번의 적용에서 제외시켰다는 것은 사실상 적대관계의 청산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번에 북한이 제외됨으로써 적성국 교역법의 적용국가는 쿠바만이 남게 되었다.

한편, 북한은 KAL기 폭파사건으로 인해 1988년 1월에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었다. 미국무성은 연례보고서를 통해 테러지원국을 발표하고 있으며, 현재 북한을 비롯하여 쿠바, 이란, 수단, 시리아 등이 지정되어 있다. 테러지원국 지정과 관련된 제재로 인해 수출관련 제한이 강화되고, 국내·외 금융지원이 제한되고 있다.

테러지원국지정 해제 절차는 미국 무기수출통제법 f항(Arms Export Control Act, Section f)에 규정되어 있다. 테러지원국지정 해제는 미국 대통령이 해제 대상국이 법규상 테러지원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무부, 상무부 등의 검증을 거쳐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통해 시행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의회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미국 대통령은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발효 희망일 45일 전까지 하원의장과 상원 외교·금융위원회에게 해제 대상국이 지난 6개월간 국제테러 행위를 지원할 사실이 없으며, 향후에도 국제테러 행위를 지원하지 않을 것임을 보장하는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45일간 의회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최종 해제가 발효된다. 부시 정부가 6월 26일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를 의회에 요청한 점을 감안할 때,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북한은 8월 11일에 테러지원국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표 2> 적성국교역법과 테러지원국 지정에 따른 주요 경제제재

구 분		제제내용
적성국교역 법	교역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산지가 북한인 상품의 수입은 재무성의 사전승인 후에 가능</li> <li>○ 북한국적의 선박에 대한 소유, 리스, 운항, 보험부보금지</li> </ul>
	금융거래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금융기관을 경유한 금융거래 제한</li> <li>○ 미국내 북한자산 동결</li> </ul>
테러지원국 지정	교역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 군수품의 수출 및 재수출의 금지, 관련 금융지원 금지 (무기수출통제법)</li> <li>○ 핵, 미사일 등 군수물자뿐만 아니라 군사적 용도로 전용될 수 있는 민수용 품목(부가가치 중 미국산의 가치가 10% 이상 포함된 제품) 수출제한(수출관리법 및 수출관리규정)</li> <li>○ 테러지원국에서 투자하여 발생한 소득은 이중과세 면제혜택을 받을 수 없음(소득세법)</li> </ul>
	경제지원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금융기관에 의한 지원반대(국제금융기관법)</li> <li>○ 미 수은 대출·보증 등 지원금지(미국수출입은행법)</li> <li>○ 대외원조금지(대외원조법)</li> <li>○ 해외민간투자공사(OPIC) 지원금지(해외민간투자공사법)</li> </ul>

자료: 김정만,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해제절차와 해제에 따른 영향,” 『수은북한경제』(2007년 가을호), p.85.

### III. 적성국교역법과 테러지원국지정 해제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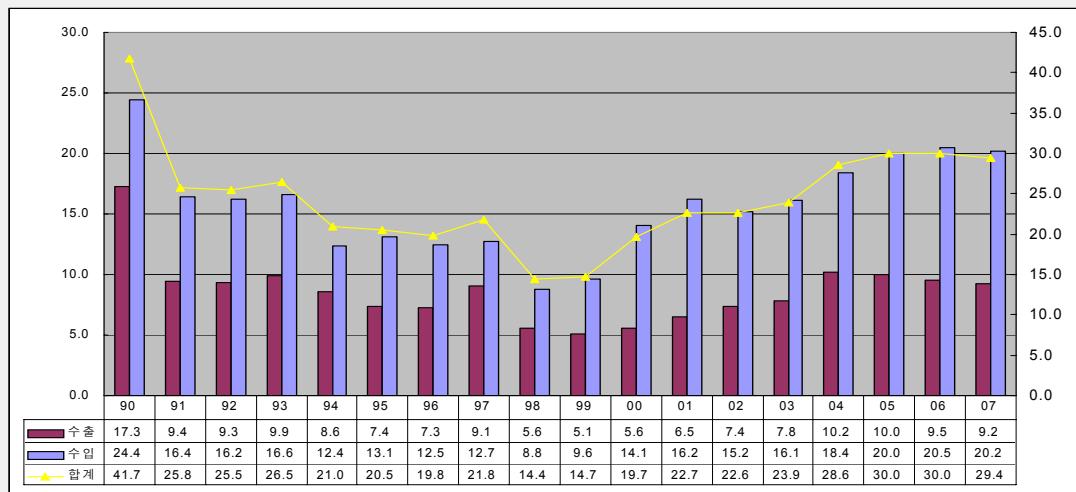
북한이 미국의 적성국 교역법과 테러지원국 지정에서 해제된다는 것은 지금까지 북한의 경제발전과 대외경제협력 확대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 중의 하나인 대북 경제제재가 대폭 완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해제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대외무역과 외국인투자 유치, 국제기구 및 선진국과의 경제협력 등 대외경제부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적성국 교역법과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우선 대외무역에서 가장 두드

되리지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산업가동률과 수출상품 경쟁력, 적성국 교역법과 테러지원국 지정 이외의 대북 경제제재 등을 감안할 때 단기적으로 북한의 대외무역이 급증하지는 않겠지만, 전반적인 북한 대외경제 여건의 개선과 대외무역 상대국의 확대 등에 힘입어 대외무역이 예년에 비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sup>5)</sup>

<그림 1> 북한의 대외무역 현황

(단위: 억 달러)



자료: KOTRA

적성국 교역법이 해제되면서 대외자산통제규정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 수입승인제와 자산동결이 해제되고, 무역거래시 미국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도 있게 된다. 우선, 수입승인제가 해제되면 북한상품을 미국시장으로 수입할 때 미 재무부의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북미간 교역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북미 양국간 교역을 살펴보면 최근 2년간 북한의 대미 수출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수입도 2007년에 170만 달러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수입이 자유화될 경우 북한의 대미수출은 물론 수입도 일정 수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수입이 자유화된다 해도 북한상품에 대한 최고관세율이 유지됨으로써, NTR 지위가 부여되기 전까지 북한산 상품이 미국 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에 따른 전략물자 거래의 완화 및 수출관리령(EAR)에 의거한 수출통제가 해제되는 것도 북한의 무역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핵, 미사일 등 군수물자뿐만 아니라 군사적 용도로 전용될 우려가 있는 민수용 품목(이중용도 품목)에 대해 미국은 수출관리규정(EAR)에 의거해 통제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반테러 통제품목에 대한 수출승인 사안별로 심의, 승인될 가능성이 있으며, 승인과정에서도 과거에 비해 상당한 유연성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출관리령에 의해 미국산 요소가 특정 비율 이상 포함된 품목을 해외에 수출할 경우 미국 제품의 재수출로 간주하여 상무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북한의 경우 지금까지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어 통제대상이 되는 미국산 요소의 비율이 10%였다. 그러나 북한이 테러지원국 지위에서 해제되면 통제대상이 되는 미국산 요소의 비율이 25%로 상향조정됨으로써, 미국기업 및 제3국 기업의 북한에 대한 수출 및 투자에 대한 제한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베트남의 사례에서도 미국의 경제제재 해제에 따른 무역증가 효과가 잘 나타나고 있다. 물론 당시 베트남의 상황과 현재 북한 상황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지만, 베트남의 경험은 주목할 만하다. 베트남은 미국의 경제봉쇄가 해제된 1994년과 1995년의 연평균 대외무역 규모가 119억 달러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1993년 이전 5년간의 연평균 수준인 56억 달러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표 3> 북한·중국·베트남의 외국인투자 유치 현황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북 한	중 국	베 트 남
1991 ~ 96 <sup>1)</sup>	24 <sup>2)</sup>	25,476	1,217
1997	307 <sup>2)</sup>	44,237	2,587
1998	31 <sup>2)</sup>	43,751	1,700
1999	-15 <sup>2)</sup>	40,319	1,484
2000	5 <sup>2)</sup>	40,772	1,289
2001	-24 <sup>2)</sup>	46,846	1,300
2002	12 <sup>2)</sup>	52,700	1,200
2003	158 <sup>2)</sup>	53,505	1,450
2004	197 <sup>2)</sup>	60,360	1,610
2005	50 <sup>2)</sup>	72,406	2,021
2006	135 <sup>2)</sup>	69,468	2,315

주: 1) Annual average

2) 이는 추정치임.

자료: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07*

미국의 적성국 교역법 및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로 인해 북한의 외자유치 및 차관도입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경제강국 건설에 있어 대외경제관계의 확대·발전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2000년대 들어 △무역사업의 발전 △경제합영 및 합작사업의 강화 △과학기술교류의 발전 △국제금융거래의 발전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였다.<sup>6)</sup> 특히, 북한 당국은 최근 외자유치 및

대외경제협력의 필요성을 적극 인정하고 있는데, 북한 당국이 제시한 외자유치 및 합영·합작사업의 필요성은 크게 △기술개간 및 현대화 △생산정상화 △외화 획득 △인민생활 제고 등이다.

외자유치 및 대외경제협력에 대한 북한이 적극성을 보이는 것은 2000년대 들어 대외경제에 대한 인식변화와 ‘실리위주의 대외정책’ 추진하였기 때문이다. 과거에 북한은 대외경제관계를 자립경제 완성의 보조적 수단으로 인식하고 정치적 친선관계 구축에 주력하였으나, 대외경제관계를 경제발전의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인식변화로 인해 대외정책도 실리와 경제협력을 중시하는 현실주의적인 방향으로 전환하였으며,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북한 당국은 관련 법제 정비 및 경제특구 확대 조치, 경제대표단 파견 등과 같은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외자유치 실적은 1970년대 후반부터 대외개방을 추진한 중국은 물론 북한보다 늦게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시작한 베트남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수준이다. 중국과 베트남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과의 관계개선과 ▲체제개혁을 동반한 대외개방을 함께 추진함으로써 외국인투자 유치와 관련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에 반해 북한은 핵 및 미사일 문제 등으로 미국과의 군사적 긴장관계가 계속되면서 관계정상화에 이르지 못했으며, 체제개혁을 배제한 채 제한적인 개방정책을 추진한 것도 외자유치 부진의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적성국 교역법과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는 북한 외자유치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 중의 하나로 지적되어 온 핵문제의 진전, 북미관계의 개선과 경제제재 해제 등에서 가시적 성과를 거둔 것이라는 점에서 외자유치에 상당히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게 되었다. 특히 미국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가능해지고, 투자 설비 및 원부자재를 북한으로 보내는 데에서 이전에 비해 제한이 상당부분 완화됨으로써 미국 기업은 물론 제3국 기업들의 대북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북한은 △높은 정치적 리스크 △개혁·개방에 대한 북한 당국의 소극적 자세 △열악한 산업인프라 △투자관련 법제의 미비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 및 관련 인적자원의 부족 등의 제약요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북 경제제재 해제가 외자유치 확대로 직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결국, 북한의 외자유치의 확대는 이번 경제제재의 해제를 계기로 북한 당국이 투자환경을 적극 개선해나간다면 중장기적으로 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대북 경제제재 해제로 외자유치와 관련하여 가장 주목되는 부분이 국제금융기구의 북한 가입과 해당 기구로부터의 차관도입 여부이다. 테러지원국 지정이 해제되었다고 북한이 IMF나 세계은행 같은 국제금융기구에 당장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세계은행 가입은 IMF 회원국으로서 IMF에 차관을 제공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북한은 IMF에 차관을 제공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국가이다.

만이 가능한데, IMF 가입은 일정 수준의 제도개혁과 함께 할당받은 출자금의 25%를 선납해야 하는데 북한이 현재 이 기준을 충족하기는 쉽지 않다. 또한 북한이 국제금융기구로부터 공적개발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정책협의, 경제통계 작성·제출, 시장경제개혁 등의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도 북한으로서는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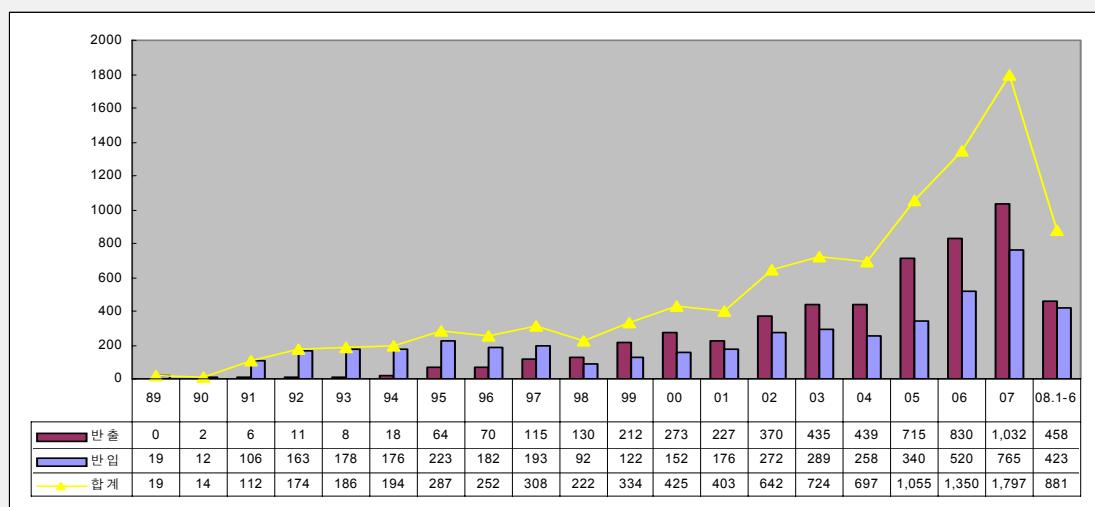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번 테러지원국 해제를 통해 북한이 국제금융기구로부터 개발자금 지원을 받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이제 국제기구로부터의 자금지원 시기와 규모는 북한 스스로의 정책적 판단과 체제개혁을 통해 결정될 것이다.

#### IV. 적성국교역법과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가 남북경협에 미치는 영향

북한의 적성국 교역법과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는 남북경협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임에 분명하다. 다만, 금년 2월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는 당국간 대화가 중단되고, 전반적인 교류·협력사업도 지난해에 비해 위축되었다는 점이다. 이 와중에 발생한 금강산 관광객 총격 사망은 남북관계 경색을 장기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자칫 6자회담 진전과 북미관계 개선등에 따른 외부적 상승요인을 남북관계 발전에 전혀 활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림 2> 남북교역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자료: 통일부

사실 남북경협은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 악화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우선 남북교역은 2007년에 17억 9,789만 달러로 전년대비 33.2%나 증가하였는데, 2008년도 상반기 중에도 8억 8,079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3%나 증가하였다. 이러한 남북교역의 증가는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한 상업적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에 기인한다.

<표 4> 경제협력사업 및 사업자 승인 현황

구분	'91~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5	계
협력사업	16	2	5	2	2	26	38	23	176	41	331
협력사업자	42	1	6	3	4	28	38	24	176	42	364

자료: 통일부

대북 경제협력사업은 최근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인해 상반기 중에 협력사업이 41건에 머물러,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다소 주춤하고 있다. 대부분 개성공단 입주기업이다.<sup>7)</sup> 최근 개성공단 내 남측 정부 관계자들의 철수와 북측의 대남 강경 발언 및 금강산 총격사건 등으로 개성공단 사업에 대한 일부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북한 당국도 개성공단 사업에 대해 자기들이 문을 닫게 하거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조치를 쉽게 취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3통문제 등과 같은 기업들의 경영상의 애로사항들이 조기에 해결되지 않음으로 인해 기업 활동에 다소 차질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남북경협이 최근 정치적 이슈나 돌발사건 등으로 다소 위축되고 있지만, 이번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해제는 직간접적으로 남북경협을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분명히 있다. 우선 전략률자 문제의 완화 내지 해결은 남한기업의 대북투자, 특히 설비반출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으며, 현재까지의 섬유·신발·봉제 등과 같은 경공업이나 노동집약적 산업의 협력에서 벗어나 중화학공업이나 첨단산업 분야의 협력으로 확대 발전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미국이 북한상품에 대한 NTR 지위는 부여되지 않고 있지만, 미국시장으로의 진입규제가 없어지고 유럽을 비롯한 제3국으로의 시장진출도 이전에 비해 용이해졌다는 점에서 남한기업의 대북투자를 촉진하는 효과도 있다.

특히, 한미FTA 협상과정에서 양국은 ‘한반도 역외가공위원회’ 설치에 합의, 개성공단 등 경제특구를 통해 한국기업이 북한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해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한반도 비핵화 진전, 환경 및 노동 기준 등 몇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전제조건이 달려 있다. 그러나 최근 북미관계 개선과 핵문제의 진전 등을 감안할 때 개성공단 제품의 원산지 문제도 당초 예상보다 빨리 해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2008/07/17) 

## &lt;각주&gt;

- 1)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김상기,『대북경제제재의 유효성 분석: 실태와 효과』, KDI 정책연구시리즈2007-09를 참조.
- 2) 최혜국대우는 미국에서 1998년 정상교역관계(NTR, Normal Trade Relations)로 용어를 변경함. 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은 항구적 정상교역관계임.
- 3) 일반특혜관세는 선진국이 개도국에 대해 최혜국대우보다 더 낮은 관세를 부여하는 일방적 시혜 성격의 조치로서 1974년 도쿄라운드에서 선언되었음.
- 4) 미국이 처음으로 대북 제재를 완화한 것은 1989년 초였는데, 당시 미국은 해외자산통제규정, 수출 관리법의 일부 개정을 통해 비상업분야와 출판, 인도주의 측면에서 극히 제한적인 완화조치를 취하였음.
- 5) 2007년도 북한의 무역총액은 전년대비 1.8% 감소한 29억 4,100만 달러를 기록하여, 2년 연속 감소하였다(2006년은 0.2% 감소). 이중 수출은 9억 1,900만 달러로 3.0% 감소하였으며, 수입은 20억 2,200만 달러로 1.3% 감소하였다. 지난 해 2·13 합의 및 10·3 합의 등에 따른 북핵문제의 진전과 북·미 양자대화의 복원, 남북관계의 진전 및 정상회담 개최 등에도 불구하고, 핵실험 이후 취해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조치가 사실상 해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13 합의의 이행이 BDA 문제로 상당 기간 지연됨으로써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들과의 무역이 정체 내지는 감소 함으로써 북한의 대외무역은 소폭 감소하였다.
- 6) 『우리 당의 선군시대 경제사상해설』(조선로동당출판사, 2005), pp.246-285 참조.
- 7) 개성공단은 2007년에 1단계 분양을 완료하여 2008년 3월말 현재 69개 기업이 가동 중이고 2만 5,930명의 북측 근로자가 일하고 있으며, 연간 생산량도 2007년에 1억 8,477만 달러를, 금년도 1/4분기에는 6,077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